##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4

발의연월일: 2025. 5. 26.

발 의 자: 강대식 • 유용원 • 강선영

백종헌 • 이인선 • 김상훈

최은석 • 유상범 • 김용태

이양수 · 고동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 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 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제4항제14호 신설).

법률 제 호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적용대상자) ① ~ ③ (생	제1조(적용대상자)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			
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		
	<u>항까지의 죄</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